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670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670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가단2655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승민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규

변론 종결2023. 5. 19.

판결 선고2023. 6. 16.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가단2655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C과의 사이에 2022. 1.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2) 피고는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6. 29. 접수 제1354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F, H,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557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C, 주식회사 F, I, J,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14285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망 D은 2022. 1. 25. 그 처인 피고, 자녀들인 C, 미국인 K(변경 전 성명 E), 미국인 L(변경 전 성명 M)를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다.

다. C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및 C, K, L는 2022. 1.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는 202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5456호로 2022. 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각 확정판결에 따른 합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1. 25.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70대의 고령인 점,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C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주식회사 F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판결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서류가 피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송달된 점, C 외 다른 자녀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C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기만

판사김성훈

판사권순호

별지